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11
------	------

제출일자 : 2021. 8. 24.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위임사무의 상위 근거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위임사무) 정비

- 1) 「약사법」 개정에 따른 사무명 및 근거 법령 조항 정비(안 별표 제3호)
- 2)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사무명 및 근거 법령 조항 정비(안 별표 제4호)
- 3) 「의료법」에 따른 사무명 및 근거 법령 조항 정비(안 별표 제6호)
-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조항 정비(안 별표 제27호)
-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사무를 위임사무로 신설(안 별표 제2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약사법」 제20조, 제21조의2, 제75조, 제69조의4, 제75조의2
- 2)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7조

3) 「의료법」 제40조, 제59조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 보건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21. 7. 19. ~ 8. 9.) : 별도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4) 규제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 임 사 무(제5조 관련)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p>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p> <p>가.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p> <p>나. 의회 내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p> <p>다.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p> <p>2.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제30조의5, 제63조, 제65조</p> <p>○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6조</p> <p>○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p> <p>○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p> <p>○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6조</p> <p>○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p>	<p>구 의 회 사무국장</p> <p>구 의 회 사무국장</p> <p>보건소장</p> <p>동 장</p>
<p>3.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지위승계포함)</p> <p>나. 폐업, 휴업, 재개신고</p> <p>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p> <p>라. 보고와 검사 등</p> <p>마. 업무개시 명령 등</p> <p>바. 회수·폐기명령 등</p> <p>사. 개수명령</p> <p>아.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시정명령</p> <p>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및 청문</p> <p>차. 등록증 갱신</p> <p>카. 약사감시원의 임명</p> <p>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p> <p>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하. 등록증 등의 재발급</p>	<p>○ 「약사법」 제20조제2항, 제21조의2</p> <p>○ 같은 법 제22조</p> <p>○ 같은 법 제41조</p> <p>○ 같은 법 제69조</p> <p>○ 같은 법 제70조</p> <p>○ 같은 법 제71조</p> <p>○ 같은 법 제74조</p> <p>○ 같은 법 제69조의4, 제75조, 제75조의2</p> <p>○ 같은 법 제76조, 제77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p> <p>○ 같은 법 제78조</p> <p>○ 같은 법 제81조</p> <p>○ 같은 법 제98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p>	<p>보건소장</p>
<p>4.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p>	<p>○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7조</p>	<p>보건소장</p>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나. 회수·폐기 명령 등 다.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라. 청문 마. 과징금부과 및 징수 바. 보고와 검사 등 사. 사용중지명령 등 아.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56조	
5. 마약류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 감시원 임명 나. 마약류명예지도원 임명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보건소장
6.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의 개설신고의 수리 나. 의원 등의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다. 휴업·폐업신고의 수리 라. 업무개시 명령 마. 보고와 업무검사 등 바. 시정명령 사. 개설허가의 취소 등 아. 의료지도원의 임명 자. 청문 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카.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의료법」 제33조제3항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59조제2항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 같은 법 제64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84조 ○ 같은 법 제92조 ○ 같은 법 제67조	보건소장
7. 의료기관(의원 등)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 「의료법」 제35조	보건소장
8. 접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에 관한 사무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가. 개설신고 수리 및 변경신고 수리 나. 휴업·폐업신고 수리 다. 업무개시 명령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 마.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신고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바. 시술소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사. 시술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의료법」 제33조 및 제81조 ○ 같은 법 제40조 및 제81조 ○ 같은 법 제59조 및 제81조 ○ 같은 법 제61조 및 제81조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1조 및 제84조 ○ 같은 법 제67조 및 제81조 ○ 같은 법 제81조 및 제92조	
9. 안마 시술소에 관한 사무 가. 개설신고 수리 및 변경신고 수리 나. 휴업·폐업신고 수리 다. 업무개시 명령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 마.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신고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의료법」 제33조 및 제82조 ○ 같은 법 제40조 및 제82조 ○ 같은 법 제59조 및 제82조 ○ 같은 법 제61조 및 제82조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2조 및 제84조 ○ 같은 법 제67조 및 제82조 ○ 같은 법 제82조 및 제92조	보건소장
10.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나. 휴업·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6조 ○ 같은 법 제33조제2항	보건소장
11.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나. 휴업·폐업 등의 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같은 법 제13조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6조 ○ 같은 법 제33조제2항	
12.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설치, 양도, 폐기) 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사항 신고 처리 다. 지도·감독(시정명령·보고 등)	○ 「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제3항	보건소장
13.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나. 예방접종의 공고 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마.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및 예방조치 바. 소독의무 사. 감염병 관리 기관의 지정 등 아.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차.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카. 감염병 역학조사 타.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및 입원 통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같은 법 제26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47조, 제49조 ○ 같은 법 제51조 ○ 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6조 ○ 같은 법 제7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41조 및 제43조	보건소장
14. 모자보건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	○ 「모자보건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나.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15.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예방접종의 실시 나. 예방접종 실시현황 보고 접수처리 다. 결핵환자 등의 의료	○ 「결핵예방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제12조제5항 ○ 같은 법 제18조	보건소장
16.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 「의료급여법」 제8조	동장
17.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세탁물처리업의 신고 등 나. 지도 및 보고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 같은 규칙 제11조	보건소장
18.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나.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신고 다.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라.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마.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업무정지 및 이에 따른 청문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5조 ○ 같은 법 제35조의2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 같은 법 제57조	보건소장
19. 구청장에 의한 입원, 입원조치의 해제, 임시 퇴원·재입원	○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보건소장
20.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 위원회의 운영	○ 「정신보건법」 제27조	보건소장
21. 사회복지시설 설치·폐지 신고, 사업정지 명령	○ 「정신보건법」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보건소장
2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나.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수리	○ 「약사법」 제45조 ○ 같은 법 제45조제5항, 제6항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업무개시 명령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허가증 등의 갱신 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23. 의료기관(의원 등)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변경 및 폐지의 신고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개수명령 마. 업무의 정지명령 등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약사법」 제41조 제1항 단서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보건소장
24.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다. 서류의 제출·검사 등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및 영업소의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58조·제59조 및 제75조 ○ 같은 법 제83조	보건소장
25.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나. 지위승계 신고 다. 보고 및 검사 등 라. 시정명령, 폐쇄명령 등 마. 폐업, 휴업 및 재개의 신고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사. 폐쇄명령에 따른 청문	○ 「모자보건법」 제15조 ○ 같은 법 제15조의3 ○ 같은 법 제15조의7 ○ 같은 법 제15조의8, 제15조의9 ○ 같은 법 제15조의10 ○ 같은 법 제15조의11 ○ 같은 법 제15조의13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27조	
2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 다. 보고 및 검사 등 라. 폐기명령 등 마. 등록취소 바. 청문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아. 등록증 재발급	○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 ○ 같은 법 제44조의2제4항 ○ 같은 법 제44조의5, 제69조제1항 ○ 같은 법 제44조의5, 제71조 ○ 같은 법 제76조의3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보건소장
27. 의약품유통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유통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지정신청 나. 실태조사 및 적격업소 지정서 발급 다. 사후관리(적격업소의 지정 취소 및 지정 등)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의약품유통품질 관리 기준)의 III.의약품 도매상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의약품유통품질 관리 기준)의 III.의약품 도매상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의약품유통품질 관리 기준)의 III.의약품 도매상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보건소장
28.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5항 ○ 같은 법 제6조의3 제4항	동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위 임 사 무			[별표] 위 임 사 무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	⋮		⋮	⋮	
3. 약국에 관한 다음 의 사무		보건 소장	3. 약국에 관한 다음 의 사무		보건 소장
가. 개설등록 및 등 록사항 변경	○ 「약사법」 제20 조제2항		가. 개설등록 및 등 록사항 변경(지 위승계포함)	○ 「약사법」 제20 조제2항, 제 21 조의2	
⋮	⋮		⋮	⋮	
아. 관리자 등의 변 경명령	○ 같은 법 제75 조		아. 관리자 등의 변 경명령, 시정명 령	○ 같은 법 제75 조, 제69조의4, 제75조의2	
⋮	⋮		⋮	⋮	
4.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 의 사무		보건 소장	4.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 의 사무		보건 소장
가.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_		가.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7조	
⋮	⋮		⋮	⋮	
6. 의료기관(의원 등)에 관한 다음 의 사무		보건 소장	6.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 소장
⋮	⋮		⋮	⋮	
다. 의원 등의 휴 업·폐업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40 조		다. 휴업·폐업신고 의 수리	○ 같은 법 제40 조	
라. 의원 등의 업무 개시명령	○ 같은 법 제59 조		라. 업무개시 명령	○ 같은 법 제59 조제2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 기관
⋮	⋮		⋮	⋮	
27. 의약품유통관리 에 대한 다음의 사무		보건 소장	27. 의약품유통관리 에 대한 다음의 사무		보건 소장
가. 의약품유통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지 정신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 (의약품유통관 리 기준)의 제 7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가. 의약품유통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지 정신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 (의약품유통품 질 관리 기준) 의 Ⅲ.의약품 도매상 제1호 가목부터 다목 까지	
나. 실태조사 및 적 격업소 지정서 발급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 (의약품유통관 리 기준)의 제 7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나. 실태조사 및 적 격업소 지정서 발급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 (의약품유통품 질 관리 기준) 의 Ⅲ.의약품 도매상 제1호 가목부터 다목 까지	
다. 사후관리(적격 업소의 지정 취 소 및 시정 등)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 (의약품유통관 리 기준)의 제 7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다. 사후관리(적격 업소의 지정 취 소 및 시정 등)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 (의약품유통품 질 관리 기준) 의 Ⅲ.의약품 도매상 제1호 가목부터 다목 까지	
28. <신설>			28. 주택 임대차 계 약의 신고에 관 한 다음의 사무		동장
			가. 주택 임대차 계 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 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5항	
			나. 주택 임대차 계 약의 변경	○ 같은 법 제6조의 3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위임사무의 상위 근거법령 등이 개정되어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정책기획팀 황상덕
연 락 처	2627 - 1072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시행 2017. 3.13.]

전문개정 [1996.07.24 조례 제117호]

개정 [1997.03.31 조례 제146호]

개정 [1998.09.26 조례 제18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9.09.22 조례 제236호] (통·반설치조례)

개정 [2000.05.18 조례 제274호]

개정 [2001.06.30 조례 제327호]

개정 [2004.01.20 조례 제393호]

(일부개정) 2004.05.24 조례 제396호

(일부개정) 2006.07.27 조례 제468호

(일부개정) 2011.01.01 조례 제647호

(일부개정) 2011.12.29 조례 제685호 [제명변경]

(일부개정) 2017.03.13 조례 제8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9.26> <개정 2006.07.27, 2011.01.01, 2011.12.29>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1.12.29>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6. 7. 27>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등록·면허·검사등 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제117호, 1996.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6호, 1997.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8호, 1998.09.26)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1항중 "구의회사무국장"을 각각 "구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별표 수임기관란 중 "구의회사무국장"을 "구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236호, 1999.09.22) (통·반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6호의 수임기관란의 "동장"을 각각 "동장(단, 시흥1동장은 제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제274호, 2000.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93호, 2004.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96호, 2004.05.24)

이 조례는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68호, 2006.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47호, 201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85호,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제899호, 2017.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98. 9. 26, '99. 9. 22, 2000. 5. 18, 2001. 6. 30, 2004. 1. 20, 2004. 5. 24, 2006. 7. 27, 2011.1.1., 2011.12.29., 2017.3.13.>

위 임 사 무(제5조 관련)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나. 의회 내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 다.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제30조의5, 제63조, 제65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6조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6조	구 의 회 사무국장 구 의 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2.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 장
3.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나. 폐업, 휴업, 재개신고 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업무개시 명령 등 바. 회수·폐기명령 등 사. 개수명령 아.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자.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및 청문 차. 등록증 갱신 카. 약사감시원의 임명 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하. 등록증 등의 재발급	○ 「약사법」 제20조제2항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5조 ○ 같은 법 제76조, 제7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 같은 법 제78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보건소장
4.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가.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나. 회수·폐기 명령 등 다.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라. 청문 마. 과징금부과 및 징수 바. 보고와 검사 등 사. 사용중지명령 등 아.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	○ 「의료기기법」 제17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38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56조	
5. 마약류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 감시원 임명 나. 마약류명예지도원 임명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보건소장
6. 의료기관(의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의 개설신고의 수리 나. 의원 등의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다. 의원 등의 휴업·폐업신고의 수리 라. 의원 등의 업무개시명령 마. 보고와 업무검사 등 바. 시정명령 사. 개설허가의 취소 등 아. 의료지도원의 임명 자. 청문 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카.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의료법」 제33조제3항 ○ 같은 법 제33조제5항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59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 같은 법 제64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84조 ○ 같은 법 제92조 ○ 같은 법 제67조	보건소장
7. 의료기관(의원 등)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 「의료법」 제35조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p>8. 접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에 관한 사무</p> <p>가. 개설신고 수리 및 변경신고 수리 나. 휴업·폐업신고 수리 다. 업무개시 명령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 마.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신고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바. 시술소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사. 시술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 「의료법」 제33조 및 제81조 ○ 같은 법 제40조 및 제81조 ○ 같은 법 제59조 및 제81조 ○ 같은 법 제61조 및 제81조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1조 및 제84조 ○ 같은 법 제67조 및 제81조 ○ 같은 법 제81조 및 제92조</p>	<p>보건소장</p>
<p>9. 안마 시술소에 관한 사무</p> <p>가. 개설신고 수리 및 변경신고 수리 나. 휴업·폐업신고 수리 다. 업무개시 명령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 마.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신고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 「의료법」 제33조 및 제82조 ○ 같은 법 제40조 및 제82조 ○ 같은 법 제59조 및 제82조 ○ 같은 법 제61조 및 제82조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2조 및 제84조 ○ 같은 법 제67조 및 제82조 ○ 같은 법 제82조 및 제92조</p>	<p>보건소장</p>
<p>10.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개설등록 나. 휴업·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6조 ○ 같은 법 제33조제2항</p>	<p>보건소장</p>
<p>11.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개설등록</p>	<p>○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p>	<p>보건소장</p>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나. 휴업·폐업 등의 신고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바. 청문 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6조 ○ 같은 법 제33조제2항	
12.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설치, 양도, 폐기) 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사항 신고 처리 다. 지도·감독(시정명령·보고 등)	○ 「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제3항	보건소장
13.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나. 예방접종의 공고 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마.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및 예방조치 바. 소독의무 사. 감염병 관리 기관의 지정 등 아.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차.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카. 감염병 역학조사 타.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및 입원 통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같은 법 제26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47조, 제49조 ○ 같은 법 제51조 ○ 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6조 ○ 같은 법 제7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41조 및 제43조	보건소장
14. 모자보건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 나.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 「모자보건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15.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예방접종의 실시 나. 예방접종 실시현황 보고 접수처리 다. 결핵환자 등의 의료	○ 「결핵예방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제12조제5항 ○ 같은 법 제18조	보건소장
16.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 「의료급여법」 제8조	동장
17.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세탁물처리업의 신고 등 나. 지도 및 보고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 같은 규칙 제11조	보건소장
18.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나.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신고 다.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라.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마.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업무정지 및 이에 따른 청문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5조 ○ 같은 법 제35조의2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 같은 법 제57조	보건소장
19. 구청장에 의한 입원, 입원조치의 해제, 임시 퇴원·재입원	○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보건소장
20.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 위원회의 운영	○ 「정신보건법」 제27조	보건소장
21. 사회복지시설 설치·폐지 신고, 사업정지 명령	○ 「정신보건법」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보건소장
2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 「약사법」 제45조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나.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수리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업무개시 명령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허가증 등의 갱신 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법 제45조제5항, 제6항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0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23. 의료기관(의원 등)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변경 및 폐지의 신고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개수명령 마. 업무의 정지명령 등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제41조 제1항 단서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보건소장
24.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다. 서류의 제출·검사 등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및 영업소의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7조 ○ 같은 법 제58조·제59조 및 제75조 ○ 같은 법 제83조 	보건소장
25.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나. 지위승계 신고 다. 보고 및 검사 등 라. 시정명령, 폐쇄명령 등 마. 폐업, 휴업 및 재개의 신고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법」 제15조 ○ 같은 법 제15조의3 ○ 같은 법 제15조의7 ○ 같은 법 제15조의8, 제15조의9 ○ 같은 법 제15조의10 ○ 같은 법 제15조의11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사. 폐쇄명령에 따른 청문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15조의13 ○ 같은 법 제27조	
2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 다. 보고 및 검사 등 라. 폐기명령 등 마. 등록취소 바. 청문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아. 등록증 재발급	○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 ○ 같은 법 제44조의2제4항 ○ 같은 법 제44조의5, 제69조제1항 ○ 같은 법 제44조의5, 제71조 ○ 같은 법 제76조의3 ○ 같은 법 제77조 ○ 같은 법 제9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보건소장
27. 의약품유통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유통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지정신청 나. 실태조사 및 적격업소 지정서 발급 다. 사후관리(적격업소의 지정 취소 및 시정 등)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의약품유통관리 기준)의 제7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의약품유통관리 기준)의 제7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의약품유통관리 기준)의 제7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보건소장

관계법령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 3. 18.>

[헌법불합치,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2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①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거나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양수일부터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69조의4(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17. 10. 24., 2020. 4. 7.>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6조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5. 12. 29.]

제75조(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의약품등의 제조업 관리자 또는 약국의 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약국개설자에게 각각 그 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75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 개설자가 제4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22.]

【의료기기법】

제16조(수리업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제조인증·제조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를 받은 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신고를 하려는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기 회사가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른 수리업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대상 품목, 기준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수리”로, “제조업허가”는 “수리업신고”로, “생산관리”는 “수리관리”로, “제조업자”는 “수리업자”로 각각 본다. <개정 2016. 12. 2., 2018. 12. 11.>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0. 2. 18.>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2020. 2. 18.>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판매업신고를 한 자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3.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제12조 및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판매 또는 임대”로, “제조업허가”는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각각 본다. <개정 2018. 12. 11.>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12. 20.>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0. 8. 11.>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18. 10. 25.>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제62조제7호 관련)

Ⅲ. 의약품 도매상

1. 적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가. 지정신청

- 1) 이 기준에 따른 적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도매상은 별지 제78호서식의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1)에 따라 이 기준의 실시상황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평가 신청일 이전에 15일 이상 이 기준을 적용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나. 적격업소의 지정

- 1)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목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평가신청 자료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1)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격 여부를 판정하고, 적합하다고 판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이하 "적격업소"라 한다)로 지정하고 별지 제79호서식의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3) 2)에 따른 실태조사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조사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 사후관리

-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적격업소로 지정된 도매상에 대해 3년에 1회 이상 실시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상에 대해 적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3) 시장·군수·구청장은 1)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변경되거나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매상에 대해서는 따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조사"라 한다)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